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60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대책('23.3.28)에 따라 세대원 수에 맞는 적정 면적기준으로 공급할 예정('24.3.25~)으로, 거주중 세대원수의 변동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되는 가구가 퇴거 등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임대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급면적 초과 가구에 대한 임대료 할증 기준 마련(안 제6호)

거주중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면적 기준 초과 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초과된 면적기준으로 임대료 할증비율 적용

나. 용어정비(안 제2호)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정비(‘절사하여 계산한다’ → ‘버린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

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